정읍시 제2024-120호

『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』 예정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 예정임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11월 4일

정 읍 시 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2. 법적근거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

업종	업소명	영업자	업소 소재지	위반사항	처분 내용
제과점영업	이정인떡내음	이00	정읍시 수성로 45-1	사업자등록말소 (2016.11.30.)	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제과점영업	블랑지에	안00	정읍시 충정로 74-3	사업자등록말소 (2021.8.5.)	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4. 공고기간 : 2024.11.4. ~ 2024.11.20. (16일간)
5. 고지사항
   ○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2024.11.20.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   ○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(제기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(063-539-6905)